KOSHA GUIDE

C - 96 - 2014

- (마) "설계내역서"라 함은 도급인이 작성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하여 예 정가격을 산출한 설계서를 말한다.
- (바) "산출내역서"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수량, 규격, 단위, 단가 등을 기재한 공사금액을 산출하고 공사계약 시에 도급인에게 제출한 도서를 말한다.
- (사) "예정가격단가"라 함은 도급인이 거래실례가격,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, 이미 수행한 실적을 토대로 정한 실적가격, 감정가격 또는 견적가격 등을 기준으로 결정한 가격을 말한다.
- (아) "계약단가"라 함은 수급인이 공사계약 시에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 가를 말한다.
- (자) "낙찰률"이라 함은 해당공사의 예정가격을 작성한 설계내역서 상의 총공 사금액 대비 수급인이 공사계약 당시에 도급인에게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총공사금액의 비를 말한다.
- (차) "설계변경"이라 함은 도급인 또는 수급인의 요청에 따라 설계서와 다르 게 공사하거나 설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을 추가로 공사함으로 인하여 사용재료 종류의 변경, 사용재료 물량의 변경, 신규 비목의 발생 및 공사금액 증감 등에 대하여 도급인과 수급인이 변경하기로 합의한 사항을 말한다.
- (카) "설계변경 요청"이라 함은 도급인 또는 수급인이 계약당사자에게 설계변 경할 것을 요청하는 절차를 말한다.
- (2)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『산업안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』, 『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』, 기타 건설공사 계약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